

이창한 / 6월 / 실전 GS B형 / 7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4747	21.5	14.5	20	13.5	69.5	1	0.25%	405
541405	21.5	14.5	20	13	69	2	0.49%	
544751	21.5	14.5	19.5	13	68.5	3	0.74%	
541433	22.5	14.5	18.5	12	67.5	4	0.99%	
543978	22	14.5	18	13	67.5	4	0.99%	
541447	23.5	14.5	17.5	11	66.5	6	1.48%	
543302	21	14	19	11	65	7	1.73%	
544433	20.5	14.5	18.5	11.5	65	7	1.73%	
541450	22	13	16.5	12.5	64	9	2.22%	
541565	20.5	14.5	20	9	64	9	2.22%	
543321	22	10	20	12	64	9	2.22%	
543762	20.5	13.5	19.5	10.5	64	9	2.22%	
541511	21	13	17	11	62	24	5.93%	
544704	22	13	17	11.5	63.5	13	3.21%	
544754	21.5	11.5	18	12.5	63.5	13	3.21%	
541491	18	13	19	13	63	15	3.70%	
541585	20.5	9.5	21	12	63	15	3.70%	
541600	20	12	19.5	11.5	63	15	3.70%	
544024	22	11	19.5	10.5	63	15	3.70%	
544525	21	13	16.5	12.5	63	15	3.70%	
541509	20	14	16.5	12	62.5	20	4.94%	
543194	20.5	12	18	12	62.5	20	4.94%	
543207	21	13	17	11.5	62.5	20	4.94%	
544522	21	13	18	10.5	62.5	20	4.94%	
541441	21.5	13.5	16	11	62	24	5.93%	
541461	18	13.5	20	10.5	62	24	5.93%	
544441	20.5	14	17	10.5	62	24	5.93%	
541334	21	12.5	19	9	61.5	28	6.91%	
541448	18.5	14.5	18.5	10	61.5	28	6.91%	
541477	22	11.5	18.5	9.5	61.5	28	6.91%	
541558	18	11.5	20	12	61.5	28	6.91%	
543346	18	11.5	20.5	11.5	61.5	28	6.91%	
544155	20.5	12.5	19.5	9	61.5	28	6.91%	
541350	20.5	13.5	16.5	10.5	61	34	8.40%	
541483	22	8	20	11	61	34	8.40%	
541495	18.5	11.5	19	12	61	34	8.40%	
543192	18.5	13.5	17.5	11.5	61	34	8.40%	
544013	22	12.5	15	11.5	61	34	8.40%	
544501	18.5	12.5	18	12	61	34	8.40%	
543354	21	11.5	18.5	10	61	34	8.40%	
541596	19	12.5	19	10	60.5	41	10.12%	
543226	19.5	12	19.5	9.5	60.5	41	10.12%	
544113	18	13	17	12.5	60.5	41	10.12%	
544479	19	13.5	18	10	60.5	41	10.12%	
543379	20	12	16.5	12	60.5	41	10.12%	
543812	19.5	10.5	18	12.5	60.5	41	10.12%	
544520	15.5	13.5	19	12.5	60.5	41	10.12%	
541457	20	13	17	10	60	48	11.85%	
541557	21	12	18.5	8.5	60	48	11.85%	
543465	22	13.5	18.5	6	60	48	11.85%	
544461	21.5	9	18	11.5	60	48	11.85%	
544515	20.5	11	18	10.5	60	48	11.85%	
540807	20	13.5	16.5	9.5	59.5	53	13.09%	
541516	20	14.5	17	8	59.5	53	13.09%	

543265	22.5	11.5	17.5	8	59.5	53	13.09%
544760	20.5	11.5	18	9.5	59.5	53	13.09%
540922	20.5	11.5	17	10.5	59.5	53	13.09%
541326	22	10.5	15.5	11	59	58	14.32%
541336	18.5	11.5	17.5	11.5	59	58	14.32%
541481	20.5	10.5	18	10	59	58	14.32%
541497	21	13	15.5	9.5	59	58	14.32%
543288	21.5	13	17.5	7	59	58	14.32%
544389	18	14	19.5	7.5	59	58	14.32%
544672	20.5	12.5	15	11	59	58	14.32%
544757	17	12.5	18	11.5	59	58	14.32%
529059	18.5	12	15	13	58.5	66	16.30%
541464	19.5	11.5	18.5	9	58.5	66	16.30%
541504	22	10.5	14	12	58.5	66	16.30%
541551	17.5	14	14.5	12.5	58.5	66	16.30%
541571	19.5	11.5	17.5	10	58.5	66	16.30%
544859	21	12.5	17	8	58.5	66	16.30%
544350	14.5	14	18	12	58.5	66	16.30%
544503	18	12.5	17.5	10.5	58.5	66	16.30%
541337	21	13.5	15	8.5	58	74	18.27%
541473	19	10.5	18	10.5	58	74	18.27%
541540	19.5	10	18.5	10	58	74	18.27%
541607	20.5	9	17.5	11	58	74	18.27%
541611	18	12.5	16.5	11	58	74	18.27%
543248	17.5	11	18	11.5	58	74	18.27%
535461	19	10.5	16.5	12	58	74	18.27%
543781	21	13.5	15	8.5	58	74	18.27%
544846	17.5	11	18	11.5	58	74	18.27%
541335	19	14	16	8.5	57.5	83	20.49%
541445	23	11	15.5	8	57.5	83	20.49%
541490	19.5	14	17.5	6.5	57.5	83	20.49%
543167	21	11.5	16	9	57.5	83	20.49%
543277	20	12.5	17	8	57.5	83	20.49%
544474	17.5	13	17.5	9.5	57.5	83	20.49%
544131	19	9	19.5	10	57.5	83	20.49%
540877	20	11	18	8	57	90	22.22%
540882	18.5	11	15.5	12	57	90	22.22%
541333	21	11	18.5	6.5	57	90	22.22%
541499	22	11	14.5	9.5	57	90	22.22%
541587	17	8	20.5	11.5	57	90	22.22%
543464	16.5	10.5	19	11	57	90	22.22%
543307	18.5	14.5	16.5	7.5	57	90	22.22%
544137	21	12.5	14	9.5	57	90	22.22%
544533	18	10.5	19	9.5	57	90	22.22%
544708	21	11	17.5	7.5	57	90	22.22%
541451	21.5	12.5	14	8.5	56.5	100	24.69%
541468	18.5	13.5	15.5	9	56.5	100	24.69%
541562	21.5	11	13.5	10.5	56.5	100	24.69%
544788	18.5	10	18.5	9.5	56.5	100	24.69%
543227	19.5	10.5	17	9.5	56.5	100	24.69%
544099	19.5	10.5	17	9.5	56.5	100	24.69%
544697	16.5	13	17	10	56.5	100	24.69%
544926	16.5	13	16	11	56.5	100	24.69%
540849	19	12	15	10	56	108	26.67%
541595	18.5	9	18	10.5	56	108	26.67%
544796	19	10.5	16.5	10	56	108	26.67%
544843	16.5	9.5	18	12	56	108	26.67%

544915	21.5	10.5	16	8	56	108	26.67%
544459	19.5	11	15.5	10	56	108	26.67%
541463	20.5	11	18	6	55.5	114	28.15%
541579	15.5	14.5	18	7.5	55.5	114	28.15%
535491	17.5	11.5	16.5	10	55.5	114	28.15%
544508	19	9.5	17.5	9.5	55.5	114	28.15%
529402	22	9.5	17.5	6	55	118	29.14%
541137	18.5	13	16.5	7	55	118	29.14%
541471	18	7.5	17	12.5	55	118	29.14%
541502	19	11	14	11	55	118	29.14%
541508	19	8.5	17.5	10	55	118	29.14%
541544	20.5	11.5	14	9	55	118	29.14%
541602	19.5	12	14	9.5	55	118	29.14%
543930	19.5	8.5	17.5	9.5	55	118	29.14%
543264	19.5	8.5	17.5	9.5	55	118	29.14%
543654	15.5	12.5	15.5	11.5	55	118	29.14%
544761	19.5	12.5	11	12	55	118	29.14%
541522	17	11	16	10.5	54.5	129	31.85%
541552	19.5	9.5	17	8.5	54.5	129	31.85%
543500	20.5	12	15	7	54.5	129	31.85%
544121	16.5	12.5	13.5	12	54.5	129	31.85%
544123	18	11	13.5	12	54.5	129	31.85%
544829	15	10	17	12.5	54.5	129	31.85%
541437	20	11	17	6	54	135	33.33%
544552	15	12	17	10	54	135	33.33%
543367	20	8.5	18	7.5	54	135	33.33%
541466	17	9.5	19	8	53.5	138	34.07%
541541	18	10	17	8.5	53.5	138	34.07%
541570	16.5	14	16	7	53.5	138	34.07%
541702	18	10	16.5	9	53.5	138	34.07%
543284	20	14	17	2.5	53.5	138	34.07%
544025	15.5	12	16	10	53.5	138	34.07%
544715	17.5	12	16	8	53.5	138	34.07%
528944	18.5	8	17	9.5	53	145	35.80%
540804	18.5	9	15	10.5	53	145	35.80%
541605	15.5	10.5	18.5	8.5	53	145	35.80%
544079	16.5	11	17	8.5	53	145	35.80%
543678	17.5	12	15	8.5	53	145	35.80%
544780	19.5	13.5	11	9	53	145	35.80%
528949	19	7.5	16.5	9.5	52.5	151	37.28%
535211	21	11	13.5	7	52.5	151	37.28%
541453	14.5	11.5	17	9.5	52.5	151	37.28%
541524	21	8.5	16.5	6.5	52.5	151	37.28%
541581	16	11.5	15	10	52.5	151	37.28%
543306	18	10.5	14.5	9.5	52.5	151	37.28%
543585	19	14	15	4.5	52.5	151	37.28%
543643	19	8.5	16.5	8.5	52.5	151	37.28%
544762	19	6.5	18	9	52.5	151	37.28%
544741	15.5	13.5	16.5	7	52.5	151	37.28%
529165	13.5	12.5	17.5	8.5	52	161	39.75%
529237	18	10.5	15.5	8	52	161	39.75%
541459	19.5	4.5	19	9	52	161	39.75%
541493	17	10	17.5	7.5	52	161	39.75%
541523	16.5	13.5	13.5	8.5	52	161	39.75%
543197	16.5	10.5	17	8	52	161	39.75%
543463	19	11.5	15	6.5	52	161	39.75%
543304	11.5	12.5	16	12	52	161	39.75%

544710	18	10.5	15	8.5	52	161	39.75%
540345	19	11.5	15	6.5	52	161	39.75%
540936	18.5	12	11.5	9.5	51.5	171	42.22%
541345	22	9.5	14	6	51.5	171	42.22%
541443	15.5	10	15	11	51.5	171	42.22%
544494	16.5	11	17	7	51.5	171	42.22%
544718	17.5	10	15.5	8.5	51.5	171	42.22%
543935	19	9.5	14.5	8.5	51.5	171	42.22%
543983	21.5	12.5	9	8.5	51.5	171	42.22%
544096	18	10	16.5	7	51.5	171	42.22%
535142	15	12	15	9	51	179	44.20%
535316	22.5	8	12	8.5	51	179	44.20%
541430	15	10	16.5	9.5	51	179	44.20%
541594	18	6	18	9	51	179	44.20%
541781	20	5.5	16	9.5	51	179	44.20%
543715	16	10.5	16.5	8	51	179	44.20%
544486	18.5	8	18	6.5	51	179	44.20%
540810	19.5	10	14	7	50.5	186	45.93%
540885	17.5	12	12.5	8.5	50.5	186	45.93%
541484	16	9.5	16	9	50.5	186	45.93%
541512	14.5	10.5	15.5	10	50.5	186	45.93%
541542	17.5	8	16	9	50.5	186	45.93%
544071	19.5	8	16	7	50.5	186	45.93%
544481	14	11.5	15.5	9.5	50.5	186	45.93%
543713	19.5	12	10.5	8.5	50.5	186	45.93%
544497	12	14	16.5	8	50.5	186	45.93%
541324	16.5	8	14.5	11	50	195	48.15%
541329	14	10.5	17	8.5	50	195	48.15%
541573	18.5	8	17	6.5	50	195	48.15%
541582	15	10	15.5	9.5	50	195	48.15%
543209	19	8	13.5	9.5	50	195	48.15%
543667	15.5	13	9.5	12	50	195	48.15%
544340	12.5	12	16.5	9	50	195	48.15%
544367	18	10.5	14.5	7	50	195	48.15%
544477	17	10.5	14.5	8	50	195	48.15%
529014	17	9.5	15	8	49.5	204	50.37%
535969	19	10	14.5	6	49.5	204	50.37%
544402	22	14.5	12	1	49.5	204	50.37%
544317	19.5	13	11	6	49.5	204	50.37%
544396	16.5	11	14.5	7.5	49.5	204	50.37%
543196	19.5	9	11.5	9.5	49.5	204	50.37%
541338	14.5	13	13	8.5	49	210	51.85%
541469	17.5	10.5	18	3	49	210	51.85%
541507	13.5	13	15.5	7	49	210	51.85%
541568	21	4.5	13.5	10	49	210	51.85%
541575	18.5	11	13	6.5	49	210	51.85%
541593	17.5	14.5	11.5	5.5	49	210	51.85%
544372	14	13	12.5	9.5	49	210	51.85%
544812	14.5	8.5	17.5	8.5	49	210	51.85%
543352	17.5	11	13	7.5	49	210	51.85%
541327	15.5	12	14.5	6.5	48.5	219	54.07%
541554	11	11	22	4.5	48.5	219	54.07%
543198	21.5	4.5	14.5	8	48.5	219	54.07%
543311	19	10	13.5	6	48.5	219	54.07%
543635	15.5	7	16.5	9.5	48.5	219	54.07%
540794	19.5	9	15	4.5	48	224	55.31%
540819	18.5	12.5	17	0	48	224	55.31%

541485	15	11	11	11	48	224	55.31%
544698	15	9	17.5	6.5	48	224	55.31%
540837	19	7.5	13	8	47.5	228	56.30%
541462	20	8.5	11	8	47.5	228	56.30%
541521	17	9.5	13.5	7.5	47.5	228	56.30%
541538	12.5	13	15	7	47.5	228	56.30%
544749	13	9.5	14	11	47.5	228	56.30%
543828	13.5	9.5	16	8.5	47.5	228	56.30%
544031	14.5	9.5	15.5	8	47.5	228	56.30%
544776	17.5	11	14	5	47.5	228	56.30%
543878	15	8	15.5	9	47.5	228	56.30%
541340	13.5	10	15.5	8	47	237	58.52%
541589	17	7.5	15	7.5	47	237	58.52%
543256	17.5	9	15.5	5	47	237	58.52%
543260	16.5	7.5	15	8	47	237	58.52%
544378	14.5	10.5	15	7	47	237	58.52%
540791	17	8	17	4.5	46.5	242	59.75%
540795	18.5	4	16	8	46.5	242	59.75%
541328	17	8.5	13.5	7.5	46.5	242	59.75%
541458	18	6.5	15	7	46.5	242	59.75%
541599	17	7.5	15.5	6.5	46.5	242	59.75%
541608	17.5	8.5	10.5	10	46.5	242	59.75%
541614	16.5	7.5	14.5	8	46.5	242	59.75%
543201	18.5	10.5	10.5	7	46.5	242	59.75%
544733	15.5	8	16.5	6.5	46.5	242	59.75%
544817	18.5	7	13.5	7.5	46.5	242	59.75%
543820	17	9.5	13	7	46.5	242	59.75%
541341	16	8	16	6	46	253	62.47%
541444	14.5	8	15.5	8	46	253	62.47%
541503	14	4.5	16	11.5	46	253	62.47%
543626	14.5	13	7	11.5	46	253	62.47%
544437	17	8	12.5	8.5	46	253	62.47%
541432	19.5	9	11.5	5.5	45.5	258	63.70%
541604	17.5	9	13	6	45.5	258	63.70%
543222	18	14	13.5	0	45.5	258	63.70%
544436	18	9.5	11.5	6.5	45.5	258	63.70%
544769	16.5	8.5	14.5	6	45.5	258	63.70%
543624	17.5	9.5	12	6.5	45.5	258	63.70%
544547	16	10	17	2.5	45.5	258	63.70%
544745	15.5	6	16.5	7.5	45.5	258	63.70%
544779	14	8	17	6.5	45.5	258	63.70%
543349	17	9	9.5	10	45.5	258	63.70%
541454	21	9.5	14.5	0	45	268	66.17%
543147	16.5	10	11	7.5	45	268	66.17%
543214	16	8.5	13.5	6.5	44.5	270	66.67%
543258	17	7.5	14.5	5.5	44.5	270	66.67%
544145	18.5	2.5	14.5	9	44.5	270	66.67%
544828	15.5	9.5	13.5	6	44.5	270	66.67%
540799	16.5	8.5	11	8	44	274	67.65%
540921	15	9	11	9	44	274	67.65%
541500	14.5	8.5	15	6	44	274	67.65%
543224	17.5	11.5	10	5	44	274	67.65%
543312	16.5	13.5	8	6	44	274	67.65%
543341	16.5	5	16.5	6	44	274	67.65%
544513	15.5	8.5	12	8	44	274	67.65%
544539	16.5	4	15.5	8	44	274	67.65%
540862	12.5	8	17	6	43.5	282	69.63%

541472	15	8.5	16	4	43.5	282	69.63%
544590	10	9	14.5	10	43.5	282	69.63%
540839	14	12	8	9	43	285	70.37%
544038	15	11.5	10.5	6	43	285	70.37%
544336	14	9	11.5	8.5	43	285	70.37%
544786	14	9	9.5	10.5	43	285	70.37%
535412	13	5	15	9.5	42.5	289	71.36%
540874	12	5.5	17	8	42.5	289	71.36%
541442	12	8.5	11.5	10.5	42.5	289	71.36%
541555	14.5	9	11	8	42.5	289	71.36%
544646	12.5	9.5	15	5.5	42.5	289	71.36%
544682	13	13	8.5	8	42.5	289	71.36%
544865	16	8	11	7.5	42.5	289	71.36%
543897	14	9	9	10.5	42.5	289	71.36%
541489	18	11	12	1	42	297	73.33%
541518	19.5	7	11	4.5	42	297	73.33%
541536	9	13.5	14.5	5	42	297	73.33%
541577	11.5	9.5	13.5	7.5	42	297	73.33%
544554	15.5	12	8	6.5	42	297	73.33%
541530	14	7.5	12.5	7.5	41.5	302	74.57%
535617	13.5	9.5	9.5	8	40.5	303	74.81%
541332	12.5	7	12	9	40.5	303	74.81%
543323	12	6	16	6.5	40.5	303	74.81%
543357	14.5	5.5	12.5	8	40.5	303	74.81%
540848	14.5	12	13.5	0	40	307	75.80%
540928	12.5	10.5	12	5	40	307	75.80%
541434	16.5	7	13	3.5	40	307	75.80%
541543	16	8.5	8.5	7	40	307	75.80%
543377	12.5	11	10.5	6	40	307	75.80%
544060	10.5	9	11	9.5	40	307	75.80%
544440	14.5	10	10.5	5	40	307	75.80%
544721	14	7	11.5	7.5	40	307	75.80%
540813	13	10.5	16	0	39.5	315	77.78%
541347	17	8.5	12.5	1.5	39.5	315	77.78%
541438	11.5	6	13.5	8.5	39.5	315	77.78%
541506	18	4.5	9.5	7.5	39.5	315	77.78%
541548	14.5	10	11.5	3.5	39.5	315	77.78%
544011	15	7.5	12	5	39.5	315	77.78%
540790	15	12.5	11.5	0	39	321	79.26%
541546	13.5	9	13.5	3	39	321	79.26%
541610	9	8	13.5	8.5	39	321	79.26%
544061	18	7	7	7	39	321	79.26%
544790	15.5	8	11	4.5	39	321	79.26%
544314	9.5	10.5	13.5	5.5	39	321	79.26%
541584	16	8	9	5.5	38.5	327	80.74%
543280	13.5	6	13	6	38.5	327	80.74%
541467	15.5	7	14	1.5	38	329	81.23%
544393	12	8	9	9	38	329	81.23%
544863	12.5	9.5	8.5	7.5	38	329	81.23%
543225	12.5	8	8	9	37.5	332	81.98%
543612	16	7	11.5	3	37.5	332	81.98%
535329	10	6	14	7	37	334	82.47%
541460	12.5	8	11.5	5	37	334	82.47%
541488	15.5	4	12.5	5	37	334	82.47%
541580	8.5	5	14.5	9	37	334	82.47%
543232	12.5	2.5	13.5	8.5	37	334	82.47%
529016	13	6	11	6.5	36.5	339	83.70%

541583	13	5	15	3.5	36.5	339	83.70%
543301	9	7	15	5.5	36.5	339	83.70%
543614	11.5	8.5	15	1.5	36.5	339	83.70%
544450	17	9	10	0	36	343	84.69%
535321	10	9	13.5	3	35.5	344	84.94%
543251	12	7	9.5	7	35.5	344	84.94%
543826	14	7.5	14	0	35.5	344	84.94%
528987	5	7.5	14	8.5	35	347	85.68%
529129	10.5	6.5	10	8	35	347	85.68%
540792	9.5	7.5	12	6	35	347	85.68%
540793	17	1.5	11	5.5	35	347	85.68%
540881	12	4	12.5	6.5	35	347	85.68%
540933	10	9.5	9.5	6	35	347	85.68%
540809	13	8	7.5	6	34.5	353	87.16%
540866	20	2	9.5	3	34.5	353	87.16%
540869	10	7	10.5	6.5	34	355	87.65%
544537	10	3.5	13.5	7	34	355	87.65%
540831	12.5	7.5	10.5	3	33.5	357	88.15%
540802	11	9.5	8	4.5	33	358	88.40%
540835	14	4.5	11	3.5	33	358	88.40%
541474	11	11.5	10.5	0	33	358	88.40%
543313	13	8.5	8	3.5	33	358	88.40%
541567	9	8.5	13.5	1.5	32.5	362	89.38%
543207	15	4.5	10	3	32.5	362	89.38%
542308	11.5	6.5	9	5	32	364	89.88%
543208	10.5	5	9.5	6.5	31.5	365	90.12%
544020	10.5	7	10	4	31.5	365	90.12%
535647	9.5	7.5	9	5	31	367	90.62%
541435	15.5	11.5	11.5	7.5	30.5	368	90.86%
543314	11	7.5	12	0	30.5	368	90.86%
544737	13	0	9	8.5	30.5	368	90.86%
535258	8.5	8	10.5	3	30	371	91.60%
541343	11	9	10	0	30	371	91.60%
541603	10	10	10	0	30	371	91.60%
543660	18	3.5	8.5	0	30	371	91.60%
544438	10	6.5	6.5	7	30	371	91.60%
535325	10	9	10.5	0	29.5	376	92.84%
541486	13	3.5	7.5	5.5	29.5	376	92.84%
541498	10	6.5	7	6	29.5	376	92.84%
541526	12	1.5	9	7	29.5	376	92.84%
535244	16	0	9	4	29	380	93.83%
540800	10	6	7.5	5.5	29	380	93.83%
541431	11	6.5	7.5	4	29	380	93.83%
535882	14	6.5	8	0	28.5	383	94.57%
536108	8.5	7	10.5	2.5	28.5	383	94.57%
543681	16	12.5	0	0	28.5	383	94.57%
544528	11	10	7.5	0	28.5	383	94.57%
544689	14.5	0.5	4.5	9	28.5	383	94.57%
540789	12.5	0	9.5	5.5	27.5	388	95.80%
540926	7	5	12.5	3	27.5	388	95.80%
541501	11.5	5.5	7	3.5	27.5	388	95.80%
538175	12	4	10	1	27	391	96.54%
544480	12	4.5	8.5	2	27	391	96.54%
535239	11	7.5	8	0	26.5	393	97.04%
544452	6	1	11.5	7.5	26	394	97.28%
541535	12.5	3	9	1	25.5	395	97.53%
545371	5	8	8.5	3	24.5	396	97.78%

541597	12	0	12	0	24	397	98.02%
535255	11.5	4	7.5	0	23	398	98.27%
541545	18.5	4.5	0	0	23	398	98.27%
544293	9	3.5	6	4.5	23	398	98.27%
541534	6.5	2.5	7.5	5	21.5	401	99.01%
540798	6	1	11	0	18	402	99.26%
543390	3	0.5	9	0.5	13	403	99.51%
541510	0.5	0	4	2	6.5	404	99.75%
543499	1	0	0	0	1	405	100.00%

[문제-1]

I. 선행

1. 논쟁점

① 채우부근재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만 채우이행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그 반소에서 채우의  
큰부가 확인되므로 확인의 이익 큰부가 인정되고, ② 본소  
취하청구의 판단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2. 반소가 있는 경우 채우부근재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큰부 5.5

(1) 확설

① 공정성론 반소로 소송도건흥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인  
의 이익을 증명 한다(부정성은 소의 이익 큰부 확정시에는  
사실상 변론 종결시이므로 채우부근재확인의 소 계속중 채  
우이행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

(2) 판례

소송도건구버로 적법하게 된 본소가 반소로 인해 소송  
건흥결이 생겼어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우  
이행의 반소가 제기된 사실관계로 본소의 확인의 이익  
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검토

반소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치므로 부정성의 입장  
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반소로서 본소를 부정시켜  
는 결과가 되어 확인의 이익을 일면정하는 판례도 또한

타당하므로 판례의 입장을 따른다.

(A) 설문의 경우

판례의 입장을 따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3. 본소취하권고판단의 적법성

3

(1) 판례

제2기코는 본소취하 시 피고는 원고 등 이익이 본소취하  
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취하 후 피고가 일  
방적인 본소취하로 원고가 기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본소취하권고에 대  
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2) 검토

제2기코의 취지상 본소취하로 본소도 일방의 선택  
으로 취하되어 그 상이방이 이를 막을 수 없게 되므로  
부정성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 설문의 경우

본소취하권고는 부당하다

4. 설문의 배결

1

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 부당하고 ② 본소취하권고  
의 판단 또한 부당하므로 항소심의 판단은 부적법하다.

II 설문2

1. 본정정리

1.5

인식적으로 상고심은 판결을 파기할 경우 중본판심결을  
재판장 또는 원심이 환송한다(제433조), 단 상고심까지 불  
쟁의 사실은 바탕으로 재판하기 능할 때 재판대(제  
431조) 여기서 재판장 경우, 소각하 판결에 원고만 상  
고할 경우에도 파기. 청구기각 판결을 받지 못한다.

2.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

1심판결은 그 불복판도에서 한 바 끝까지(제419조 1항)  
상고 인용시도 같다(제425조 1항) 소각하 판결의 취소  
파기 등 청구기각 재판이 이 원칙에 위배되는지 본다

3. 청구기각의 재판 거부

(1) 특설 2

1) 상고기각설

원고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판심 원  
판결을 파기할 수 없어 상고기각한다.

2) 환송설

원고만 상고했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상 환송 판결  
파기하고 재판할 수 없어 환송한다.

3) 청구기각설

소각하 판결에 대해 상고장은 불안판결을 요한  
것이므로 불안판결에 대한 불복이 인정된 것으로  
서 상고심의 제431조도 요한 경우 시 원판결을  
취소. 재판으로 청구기각할 수 없다.

## (2) 판례 2

항소심이 청구기각해야되는 데도 소가 부적법 주장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고 원고판 상고판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어불리한 청구 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하여 상고 기각설의 입장을 이라고 본다.

## (3) 경도 1

판결심은 불이익 변경은 원상회복에 의해 손해정제에 반하고, 청구기각설은 소작하판결보다 불리한 판결과이 생겨 불합치하므로, 상고기각설인 판례가 다양하다.

## 4. 선택론의 해결 1

판례에 따라 ① '청구기각의 상중이 틀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심은 파기환송한다 ② '청구기각의 상중이 틀'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상고기각해야 한다.

## II 선택론 3

### 1. 논쟁점 1

소송중 회고와 본소의 소송절차에서 용해 원고에 대해 제기하는 소이다. 반소기적 범한의 여부는 본소의 요건과 방식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 2. 반소의 요건과 방식 1



반소가 반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되고, 질  
차를 받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계속중이고, 동  
등절차에의하고, 다른 법원의 관속관할이 아니어서  
공통관할이어야 한다. (제269조) 반소도 소송으로 거 일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방식으로 반소장을 제출한다.

3. 일반소송요건 - 확인의 이익 1.5

(1) 문 제 정

이행의 소에 대해 채무부족액 확인의 반소가 제기된 경  
우로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존재가 문 제 된다.

(2) 학설

① 반소가 부적법하며 반소의 이익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② 중복소제기로 반소가 부적법하다는 견해가  
있다.

(3) 판례

"반소의 청구내용이 본소의 청구내용을 가각시키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4) 검토

반소는 동일한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중복소제기는  
아니고, 본소에서 판단될 내용으로 반소를 만  
단할 이익 없이 반소의 이익이 없이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타당하다.

수석준의배결

변소의 요건과 방식은 다른 것은 증명되었으나 일반적용  
요건인 특연의 이익이 있어 부적합한 변소이다.

<결>



14.5

8.5

[문제-2]

I. 사실

1. 논쟁거리

판결의 적법유효성판단에 있어서 ①항병의 절차에 이  
친양방 ②양사자에 이친양방인 양면승계를 검토  
하고 ③중단인 경우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을 검토한다.

2. 항병의 양방

(1) 항병의 취급

항병에 의한 법인의 소멸은 자연인의 사망과 유사한 취급이다

(2) 절차중단

「양사자인 양면양방인의 항병에 의한 소멸로 소송절차가 중단  
되고, 항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결  
치 결속체/배야한다. (제 234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적자는  
중단되지 않는다. (제 238조). 사망은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로서 중단된다.

(3) 대표권소멸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다. 대표권도 이에  
준해 법인의 항병으로 소멸한다. 즉 A는 부권대표자이다.

3. 양면 승계 여부

(1) 상속

1) 양면 승계의 공평성

소송중 사망 1항병이런 포괄 승계 원인 발생으로 양면

2.5

사망자소멸법인은 당시과거위가 상속인. 양생외사에  
게 양변 상속제되고, 수제는 절차일 뿐이다.

2) 양생상계부정설

양생상계는 병식적양사라개명과 부양하지않아등  
계절과 증가쳐다 당시과거 표시된다

(2)판례

소송중당사라사망사건에서 '사망한 때부터 소멸  
그지위를 이어받은 상속인과 의 관계에서 대립  
당사자크크를 형성하게된다.'고 하여 양생상계음  
정설의 입장이다. 이는 소송중양생도 마찬가지라.

(3)법도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 절차가 중단되리한다 (제233조)  
소송대리인이 승계인의 대리인인 것을 뜻하 판례가 타당하다.

4. 소송중안간과 판결효력

2.7

(1)판례

① 위법설은 양생상계 긍정설의 입장으로 위법해과간  
유효하다는 입장, ② 무효설은 양생상계 부정설인 상태에서  
당사자크크 회고로 양생 무효인 판결로 본다.

(2)판례

반대로 절차중안사유 발생해도 간과한 판결이 있는  
경우 수제인을 배제한 절차상위 번이 있다라도 판  
결이 양생 무효가 아니고 대립관관정설을 이유로 상보

재상이 가능할 뿐이다.

(3) 정도

당연손재가 공경되는 이상 재입상사자구조가 파괴된 적도 없어  
판례가 타당하다

5. 설문의 해결

당연손재/공경설에 의거해 소용공반 범을 간과한 판  
결은 적화권을 간과한 판결로서 적화상위법이 없는  
유효한 판결로 볼 수 있다.

6. 설문 2

1. 논쟁점리 . 5

당사자의 사망·행방후에 사망·행방된 범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로 승계인 또는 승계인에 대  
한 집행방법이 문제된다.

2. 승계인에 대한 또는 승계인의 집행방법

(1) 상속

1) 승계권행문설

승계 집행문 부여 범위로 상속인에게 집행한다는 견해다.

2) 판결정정설

판결정정으로 판결을 변경(제외)하여 원판집행문으  
로 상속인에게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2) 할계

1) 중안이 간과된 경우

'사망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반 사망자의 승계인  
을 뒤늦게 강제집행을 위해 인사권행법 제32조 2항의 승  
계집행은부여가 타당하다'

2) 중안이 되지 않은 경우 (소송제언이 있는 경우)

승계신청 행위에 대해 판결에 구당사자 표시로 선고한  
경우에는 소송제언을 당사자로 판결 정정하면 된다.

(3) 정도

중안 간과 판결도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어 상속  
계집행은부여로 구제 받기 타당하고, 단수 상속제  
신청이 간과된 경우에는 판결문에 승계인이 명하  
지 않았지만 상태로 법원이 단수로 표시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판결 정정으로 집행하여 판결이  
타당하다

3. 석문리 해결

절차 중 안의 취법이 없고, 대리권을 정지 취법이  
없는 판결로서, 승계신청을 했음에도 선고된 판  
결사항은 소송제언을 당사자로 판결 정정하면  
해결되는 하자이다. 즉, 상고나 승계집행은부여  
의 구제수단이 아닌 제2회 판결 정정제도를  
이용해 구제한다.

6.5

20

[문제-3]

특허권소

1. 논쟁점리

다인간티 소송제속중 소송목적의 전 일부가 자기원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소송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당사자로 참여가 되는 것(제 193)으로서 2호선으로  
참가취지와 참가이유구비여부를 검토한다

2. 참가이유구비여부 소송목적의 전 일부가 자기원리를 주장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참가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참가가 허용된다.

② 중립판판례로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자신이 물건  
또는 물건적 청구권과 임을 주장한 경우, 채권과 같은  
주장하더라도 자기가 매수인임을 주장하는 등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참가를 허용한 바 있다.

3. 참가취지 구비여부 - 관련참가 여부

(1) 복선

1) 관련판 상연참가선형선

중재판례로 관련참가 불허, 상연참가 허용해도  
원방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거나 주장의 취지로  
이유없는 경우에는 참가를 불허한 것은 전대이다.

2) 관련판 참가선형선

다수선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도 다수는 자신을 상대로



상가반쪽 반쪽이 다들 때 누가 제기 많이 소송정제상  
다양해 '즉장사제'로 이를 없어도 불만은 커 라는 것이다.

(2) 개정법

통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법은 [반쪽은 상대방으로 상가]  
할 수 있게 해 편협상가도 허용했다.

수상권의 대결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과 상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이 중 어디와 달리 하나만 제기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한쪽의 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쪽의  
청구권 부존재 이므로 양립불가능 관계에 있어 ① 청구권이  
가 있고 편협상가가 허용되어 인정되지도 구비되었고,  
기타 요건을 결도없이 적법한 상가다.

6

II 상문 2

1. 부당청구 5

주문 항의하지 않아 2부 부원은 상관하지 않은 판결로 이가 정  
당한지 여부는 ① 동소송의 상리부속의 성질로 본다. ② 상판  
타지 않음 부존재 이송되는지 ③ 이상된다면 상판대상이 되는  
지 정도에 부당하지 본다.

2. 독립당사자 상가소송의 상리부속 5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3조 2항) 하여 단일항정은  
요구의 지한 원, 피고라 상가인의 공동소송이 장래 되지는

안타깝다 필수적 공동소송방식에 따라 규율된다.

3. 항소심판례에 관한 소송등의 이상여부

동심판례에 이의신청은 독립당사자상기소등에서는 불만판결할 때 세당사자간 항소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일방이 항소만 경우 제1심판결 전체의 취향이 차연되고 사건전부에 이의신청 필요성이 생긴다. 하여 상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된다.

4. 상소하지 않은 자의 지위 -

동심판례는 당사인들도 항소심의 당사자라고 하여 상소심 당사자설립된다.

5.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 상관대상 여부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상관대상은 그 불복항도에서만 바꿀 수 없다. (지위 상관됨) 항소의 경우 전부이상의 지안 상소심의 상관범위는 제한된다.

(2) 판례

① 항소확정이 필요한 경우

"항소심에서 결론을 내릴 때 세당사자간 결론의 항소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항도내 항소도는 복대항소제 기반대립논쟁에게 소송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되는 것 도에 제 할 수 없다." 하여 상관대상이다.

② 항소확정이 필요없는 경우

상기인만 항소했는데, 상기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



1. 상환할 등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부분을 취소하고 원  
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을  
"오해한 것이다." 하여 동일척이 적용된다.

(3) 설문의 경우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특허항목지된 甲의 2회  
대반 500만원의 반환항구는 乙의 2회/대반  
반환항구를 500만원부분과 반환항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乙이 항소하지 않았어도 丙의 500만원부분은  
항소당으로 이상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4. 설문의 예외

심판대상이어나는 항소심판결은 부당하다.

7.5

II 설문3

1. 논쟁점1

확정된 중재판결의 내용이 취소에 갖는 법적구속력  
으로 법적안정성을 얻게 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  
면 이를 부조가 기판력에 저촉되려 문제된다. 후  
회권소의 항사자가 동일하므로 주관적범위는 문제되지 않  
고, 나머지 범위와 효력을 검토한다

2. 객관적 범위의 작용구현

(1) 객관적 범위

① 즉 문에 포함될 것이 없게 가판결을 가진다. (제2(6))

② 별다른 고상판결 주문의 취의 부당성을 반환청구권이 없다  
누판단 부분에 기한다.

(2) 작용권

① 전소소송들과 동일 선결모순관계일 때 기판력이  
작용한다. ② 설문은 "후소주의 청구는 선배사건의  
취의 청구와 동일 또는 불양적일 불가하다" 즉 동일  
방위의 작용권이다.

3. 석방위리차단술 2

(1) 의의

전소 사실상 변은 종결시의 판단에 발생한다. 따라  
서 전소의 변은 종결 전에 존재했던 공격방어행위  
를 후소에서 제를 할 수 없다.

(2) 차단술 확인

취이 주장하는 제1차우술. 공동제수인이 라는 사람은  
선배사건의 변은 종결시점의 주장할 수 있던 공격  
방어행위이므로 후소는 선배판결의 기판력에 제  
촉된다. 즉 선배판결의 새로운 법적 평가라 하여도  
변은 종결 후 사후가 될 수 없다.

4. 기판력의 본질 2

(1) 본질

① 반박금지권은 확정된 내용에 다시 재판청구를  
리하는 불능으로보다 동일한 사례가 기판력을 이유로

각각이다. ② 오수공리설은 오수된 판면을 금지하는 경우로  
보다 동등한호를 승소자차례기시 각변하고, 패소자차례기시  
에 는 각각한다

(2) 판례

"선수의 확정 판결에서 원고 승소부분은 권리불이  
익이었다" 하여 각하하고, 패소판 경우 "기각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오수판면을 하면 안되는 구속력이  
유무 기각 판결한다." 하여 오수공리설 인정이다

(3) 검토

선결. 오수관계의 경우 각하해 대항을 설명하기 어려워  
오수공리설인 판례가 타당하다.

5. 선물의 배결

결을 승소하는 패소자의 청구로 기각되어 받는다.

135

[문제-4]

I 섹션

1. 논쟁점리 - 일반적 상고이유

대법원은 법 조항에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조  
변동, 법령 또는 규칙 위반 있음을 이유로 들 수  
있으나(제432조) 본안사실은 적법 확정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제432조)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므로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별하여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검토한다.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사실문제이지만, 그 의사표  
시의 해석과 법률효과의 존재와 작용은 법률문제  
로서 법원이 판단한다.

3. 섹션의 배경

리차드슨과 그의 양보를 위해 주에게서 취득한 영도항  
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의 진술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과 리사이에 법률관계가 발생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문제가 대당되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II 섹션 2 가.

1. 논쟁점리

甲이 소송기록전송통지서를 유효하게 송달받지 못한 경우로 ① 문벌은 판결한 것이 적법한지 보고, ② 변론변환 경우 구제수단을 검토한다

2. 무변론 기각 판결의 적법 여부

(1)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는 상고인은 원판 후 소송기록전송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22조), 제출하지 않은 때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 (제429조)

(2) 설문의 경우

소송기록전송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지만 무변론 판결은 적어 없어 효력이 발생되지 못했고, 이익이 상실된 적도 없었다. 결국 상고이유서 불제출로 무변론 기각 판결 받은 것은 위법하다.

3. 구제수단 검토 - 재심 기각

(1) 원판 결정

판결한 것이 상고로서 더 상급심에 상소할 수 없고 상고장의 판결에 위법이 있어 재심 가능하지 검토한다.

(2) 재심의 의의 및 요건

확정판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불복하는 수단이다. 그 요건으로 대상적격, 기간 준수, 재심의 이익, 재심사유 주장, 보통성 등이 있다. 설문의 경우에는 등

이 재심사유 제3호의 취지가 가능하지 존재된다

(3) 재심사유 중 제3호의 의미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판대리인이 불만을 위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냈거나 또는 대리권지속으로 인해 불만이나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 고 하여 당사자의 적채권보장을 위한 것으로 목적방어방법의 제척기회를 분명하게 박탈당할정도에 유추된다. 즉, 성명오류, 절차공판장과 공소상할 받고 귀책사유없이 불응시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4) 설문의 경우

무판정배원의 잘못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설문의 경우 목적방어방법의 제척기회를 분명하게 박탈당해 절차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로서 재심사유 제3호에 준하는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재심사유 제3호를 통해 재심의 소제거할 수 있다

판 설문 2 나.

1. 목적방어

기각정과후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귀책사유없이 추후보완으로 제출된 이유서의 경우에도 판단할 필요가 없는지 문제된다

2. 추후보완의 의미

1.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방위를 보란 받을 수 있다(제117조) 불변기간 배척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등 불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3. 특허보완이유서 제출 거부 판결의 적법성

### (1) 악성

인정설로 배척한 효과가 상고기판 재항고기간의 배척과 같이 최종적 불이익을 받으므로 특허보완을 인정해야 하는 인정설과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효력이 불충족이므로 부정설이 있다.

### (2) 관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특허보완이유서 제출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부정설이 맞다.

### (3) 정도

법적합정성을 위해 불변기간이 아닌 것을 인정하지 않는게 타당하다.

### (4) 석문의 배척

특허보완이유서 제출이 불변이므로 무변은 상고기각판결한 것은 적법하다.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